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최우수작

강의안 요약서

제 목	신규 공직자를 위한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교육」
수 상 자	김보람, 김지혜, 조혜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강의대상	신규 공직자(7~9급)
강의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지 마인드 제고 ○ 장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 습득을 통한 실무수행능력 향상

단계	시간 (총60분)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사- 학습자)	강의자료 (매체/기자재)
도입	10분	1. 장애의 전반적인 이해 1) 장애의 정의 2) 등록 장애인 현황 및 실태 3) 장애 유형 및 범주	강의	통계자료
전개	15분	2. 장애인 권리의 이해 1) 장애인 인권 2)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3) 장애인 관련 지원법	강의 사례분석	시청각자료
심화	25분	3. 장애유형별 지원방법의 이해 1)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2) 보완대체의사소통(AAC) 3) 배리어프리화 유니버설디자인	강의 사례분석	보조기기활용 사진자료
정리	10분	4.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1) 장애유형별 에티켓 2) 장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 3) 복지행정 실천을 위한 역할	강의 사례분석 소감나누기	시청각자료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최우수작 강의 상세원고

※ 본 강의 원고는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주최:보건복지부,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상한 강의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수정 및 감수하였습니다.

□ 제 목 : 신규 공직자를 위한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교육」

□ 강의대상 : 신규 공직자(7~9급)

□ 강의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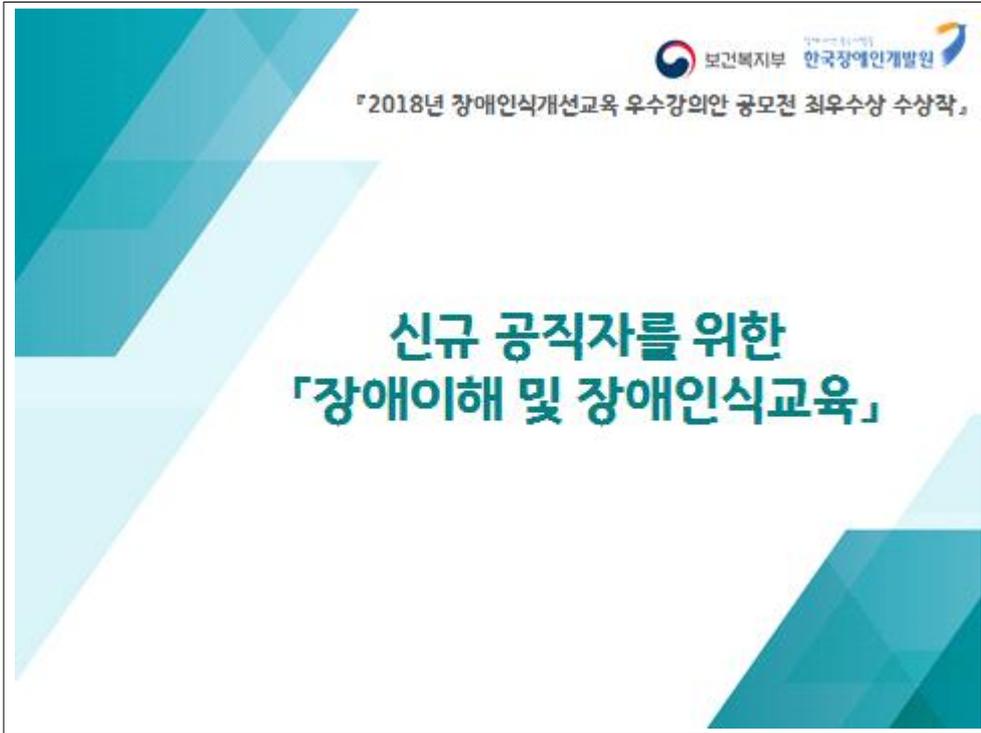
-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지 마인드 제고
- 2) 장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 습득을 통한 실무수행능력 향상
- 3)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함께 사는 사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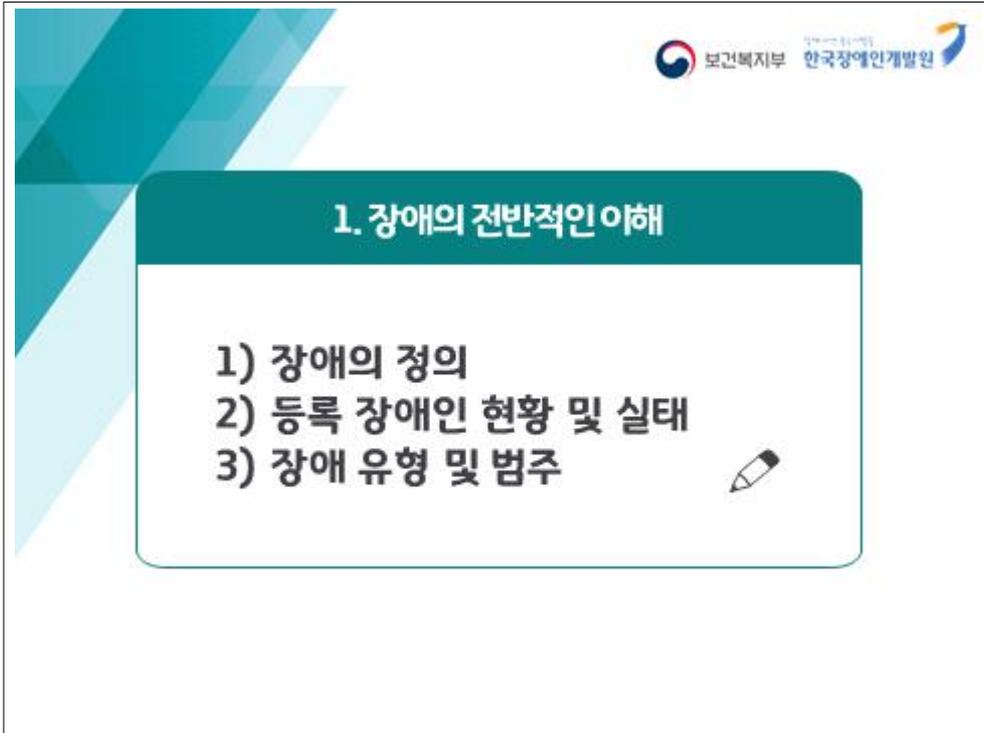
□ 강의자와 학습자간 학습내용의 충실화 방안

- 1) 장애를 다양성 중 하나로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한다.
- 2)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장애인 인권 및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교육 목적임을 설명한다.
- 3) 정답 주입보다는 각자가 느끼고 스스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습내용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TIP) 등 기타 특이사항

- 1) 장애 혹은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개선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지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장애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3) 실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4) 장애유형별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설명하고, 피교육자 스스로 활동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결론에 도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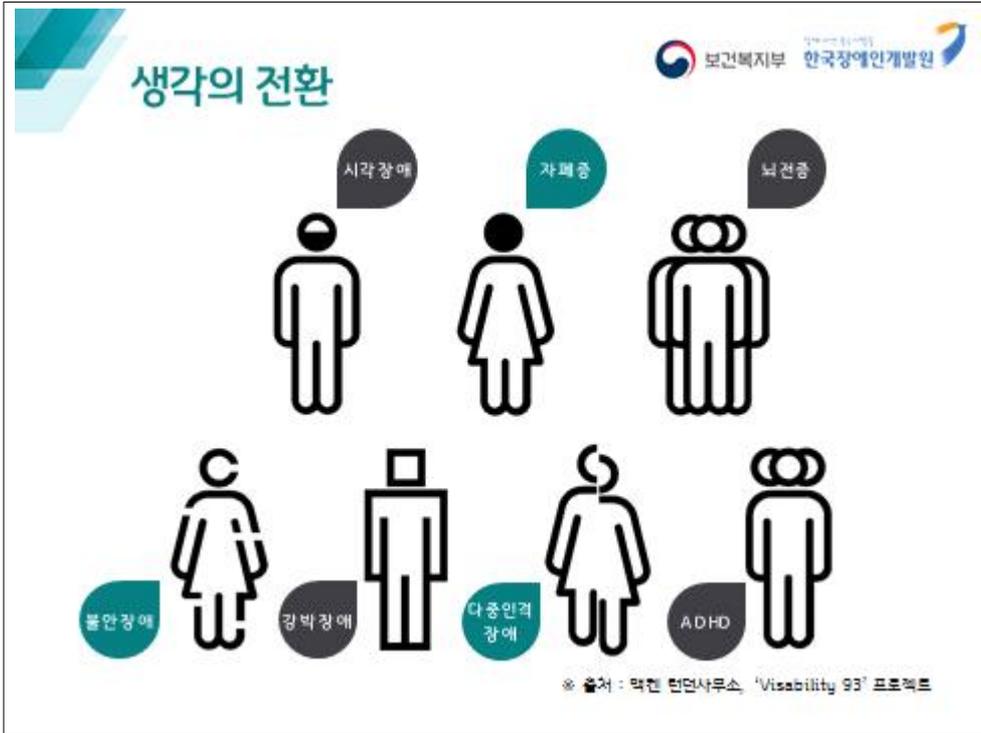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교육」 진행을 맡은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장애의 전반적인 이해, 2.장애인 권리의 이해, 3.장애유형별 지원방법의 이해, 그리고 4.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장애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픽토그램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그리고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애니메이션 효과)

이 픽토그램은 장애인 기호 탄생 50주년을 맞아, 영국의 한 디자인 회사가 만든 장애인 배려 기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배려가 필요하다’ 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 디자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전 세계 장애를 가진 인구의 93%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서 따온 ‘비저블리티 93(Visability 93)’ 입니다. 총 29종의 기호를 제작했고, 보이시는 7종의 기호 이외에 알츠하이머, 당뇨, 류머티즘, 조현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디자인 회사 ‘맥켄 런던사무소’에서는 29종의 기호와 더불어 공식 포스터도 제작했습니다. 보시는 포스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화장실은 모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개방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은 “가까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있다” 며, “디자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고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인식 변화(생각의 전환)로 인해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장애인 배려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장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떠한 ‘배려’ 를 하고 계신가요? 다음 화면에서 ‘장애’ 에 대해,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장애’ 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평등’ 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평등은 출발선이 같을 때 유효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형평’ 입니다. 형평은 똑같은 도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 ‘장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 1. 장애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생각 2. 꼭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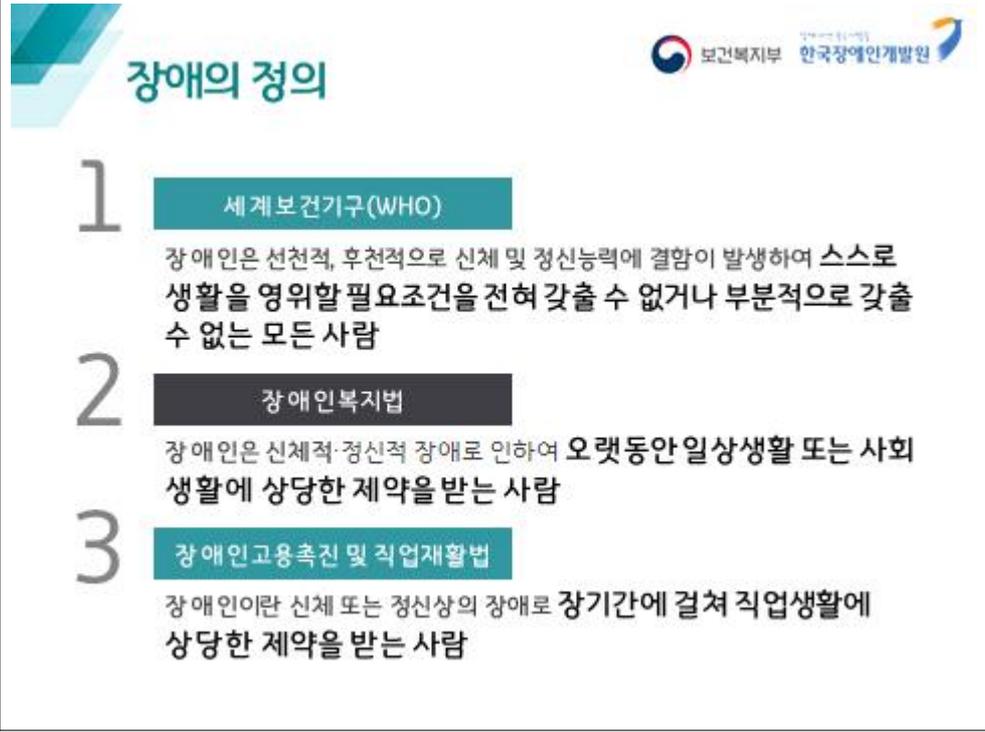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애를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 1, 생각 2에 대한 질문 후, 교육생에게 답변 유도)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1.장애와 비장애의 분포를 고려하는 통계적 관점, 2.도움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3.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 4.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 등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장애를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한 번 생각해봅시다.

TIP : ‘장애’ 를 다양성 중 하나로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애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WHO)**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모든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의 정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입니다.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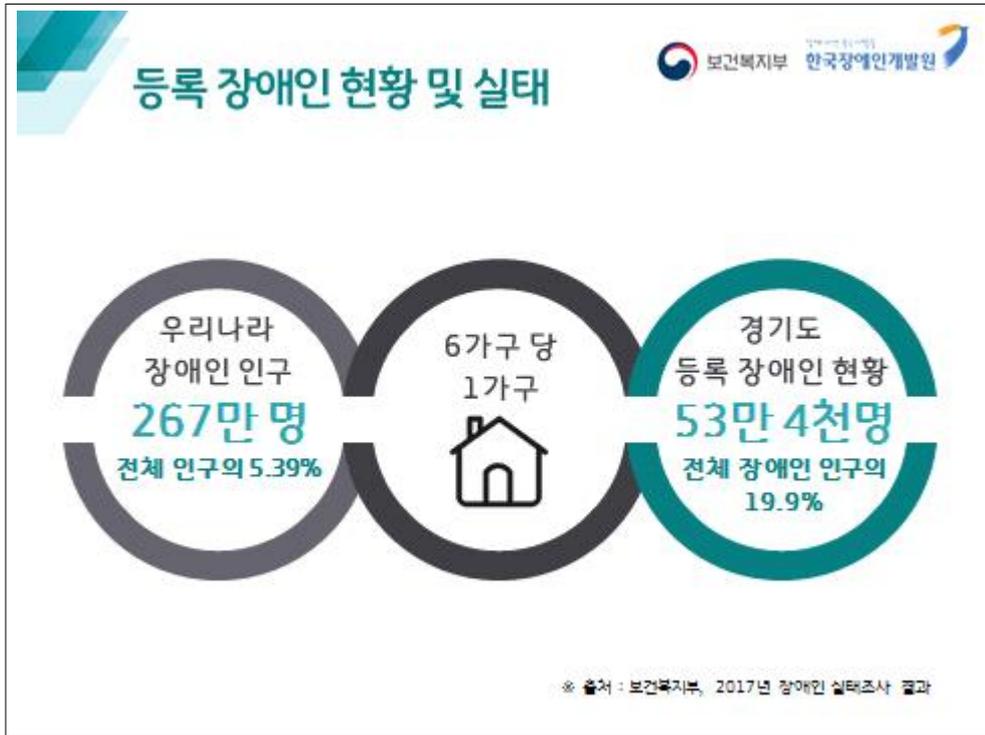
둘째,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의**입니다.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합니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정의**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관련 법, 정책, 제도 등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애인 마크가 바로 그것 중 하나인데요 이는 수동적인 국제표준 마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장애인 마크로 부각시켜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뉴욕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마크를 오른쪽과 같은 마크로 교체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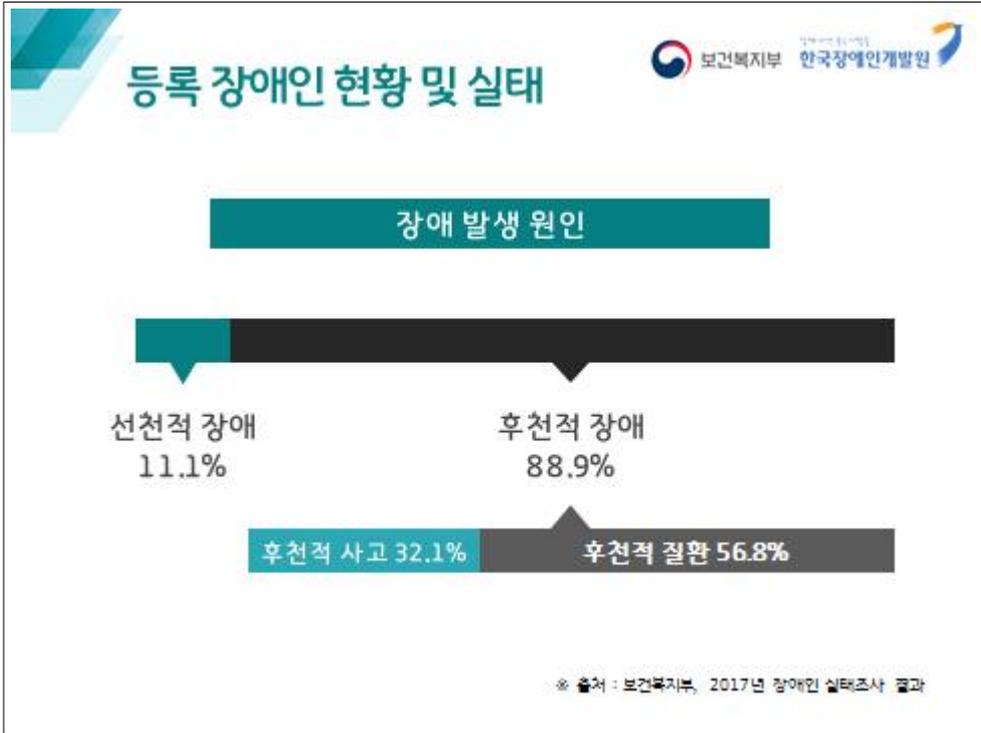
이렇듯,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6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9%를 차지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53만 4천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9.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또한, 6가구 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남이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는 사실 대부분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아 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장애인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공무원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86만 명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은 약 2만 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4%(2019년 기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 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9년부터 3.4%에서 5.0%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다양한 업무 분야(57개 직류)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 고려한 직무에 배치하고 필요한 편의지원 등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 및 범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우리나라 장애 15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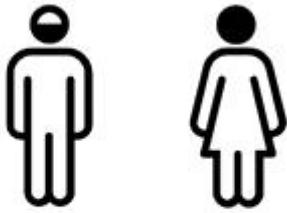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 장애	내부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div style="margin-top: 10px;"> + 암, 에이즈, 알코올중독 </div> <div style="margin-top: 10px;"> + 당뇨 </div> <div style="margin-top: 10px;"> + 의사소통이 어려운 해외이민자 </div>

장애는 한 나라의 풍속과 문화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며 각 범주에 속하는 장애유형이 총 1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암, 에이즈, 알코올중독, 당뇨,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민자도 장애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12 -

장애 유형 및 범주



- 우리나라는 장애유형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
- 외국은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포함**
: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서장애, 피부, 혈액, 내분비계, 알레르기, 당뇨,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민자, 노동력 감소자 등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의 유형이 의학적 기준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장애분류에 의거하여 장애범주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의 장애인구 비율은 10%를 상회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IP : 장애 혹은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개선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권리의 이해

- 1) 장애인 인권
- 2)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 3) 장애인 관련 지원법

이번 시간은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제작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사.사.사. 캠페인” 관련 영상입니다. 함께 감상해보실까요?

(비디오 재생)

자유, 평등, 사회, 참정, 청구.

여러분들은 이 권리들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은 이 권리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TIP : 장애인 권리의 이해를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중요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교육 목적임을 설명한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태어나면서 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리는 권리**’ 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여기 계신 신규 공직자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권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위한 개념이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감수성	인권감수성
<p style="text-align: center;">외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성질, “민감성”이라는 표현과 유사</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고정관념과 한계 인식 •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 보기 •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화하기 •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누가 약자인지 파악하기 • 변화가 필요한 것을 정리해보기 	<p style="text-align: center;">일상 속 차별과 억압을 인지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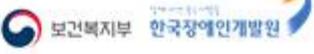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사물, 같은 행위를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민감하고, 또 불편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권감수성은 말 그대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일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과 억압을 인지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떠한 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이는 고정관념과 한계 인식,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기, 역지사지,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 이것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콜럼버스'입니다
 '인권감수성'의 눈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원주민, 선주민, 인디언이라 불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콜럼버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대륙의 발견이겠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침략의 역사'입니다.



혹시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애니메이션 효과)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 입장에서 보자면 신대륙의 발견이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콜럼버스는 침략자이고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고 일컫는 역사 속 이야기도 침략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 같은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느냐, 즉 인권감수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인권감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어리장갑, 결정장애, 눈뜯장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내포한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자제하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실천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의 노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더불어 모든 인권이 보다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시기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인류는 국제연합을 결성하고, 인간존엄성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채택하게 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권리 역시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출발점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장애계에서 장애인인권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선언**이 만들어 집니다. 가장 포괄적인 권리를 담고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 및 권리 보장”

-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
-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2006. 12. 13.) / 2008. 5. 3. 발효
- 헌법 제6조 1항 근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명시
- 이 밖에도,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성,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들 신장시킬 요소들 가지고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신체,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입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 향유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편의제공과 적극적 조치가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형성 과정과 평가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토대로 국내법이 만들어 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한국수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권리협약이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 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발의 이유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인간다운 삶과 장애인의 권리보장”

-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장애인복지법**이 가지는 의의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 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 장애인복지 조치내용을 포함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서비스 확충 등이 요구되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영역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5년마다 수립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수립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중략)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외에도 국가의 장애인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한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조항에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6조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를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례

쉬운 투표용지와 공보물, 발달장애인에 제공 감정권 보장 촉구

한국피플퍼스트 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 제공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 권리 보장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공보물을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투표용지역시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넣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선거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해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후보를 스스로 결정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꾸준히 발달장애인의 감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으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은 없는 상황이다.

※ 출처 : 레디앙미디어, 2018.4.19.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위반 사례입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투표를 어렵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보물을 제작하고, 또 충분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을까요?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례

장애인-근로자 참정권 보장 방안 공개

선관위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 부터 도입되거나 개선된 방안들을 소개했다.

선관위가 제작한 몸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위한 물품세트는 ▲발달장애인용 투표 안내자료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 가이드북 ▲확대경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비치 된다. 특수형 기표용구는 손이나 팔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손목에 기표용구가 붙어있는 밴드를 감고 손목으로 기표하도록 하거나, 입으로 기표용구를 물고 찍도록 돕는 물품이다. 투표가이드북은 탁상달력 형태의 책자로 투표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그림, 확대문자로 표현돼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2018.4.20.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자료, 특수형 기표용구, 쉽게 설명되어있는 투표가이드북, 확대경 등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4종 세트가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과 당사자 입장에서의 복지행정이 실천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대표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장애인고용법)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이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인한 장애인차별. 이러한 차별 등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다.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 구제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07년 4월 제정, 2008년 4월 11일 시행(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의
 - 장애인이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서의 제시
 -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들이 입법운동에서부터 법안 통과까지 주도하였으며, 장애인단체의 연대와 화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못했던 차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대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사례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희망' 준 판결

뇌병변장애인 000씨는 2000년 광주광역시시 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했고, 2004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중증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중략]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장씨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0점을 주고 불합격 처리했다. 면접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르게 시험시간 연장,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고 결국 장씨는 비장애인 응시자와 똑같은 10분간의 면접 시간만 주어졌다. ...[중략] 임용시험에 탈락한 장씨는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8개월 만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 2016.12.27.

위 사례는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면접에서의 불이익으로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입니다.

뇌병변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에게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지원 등 충분히 장애를 고려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이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TIP : 장애인 관련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차별유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장애인 관련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

- 2014년 5월 제정, 2015년 11월 21일 시행(약칭 :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법이 가지는 의의
 -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음은, 장애인 관련 지원법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신고의무 대상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법**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법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법 관련 사례

인감 등록할 때에도 차별 받는 발달장애인

지난 5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주부 박모(48)씨는 창원시 000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인감을 등록하려 했지만 인감등록은 하지 못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은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왔는데도 성년후견인을 데려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인감등록 절차를 위한 연습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차례 방문에 담당 공무원은 인감등록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중략]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략] 행안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본인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면 성년후견인이 없어도 인감증명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18.7.17.

혹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는 2018년 7월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본인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없어도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

- 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2월 30일 시행(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
- **장애인보조기기법**이 가지는 의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보조기기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 최소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관련 지원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연금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활동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제47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제47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행위(제47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 관련 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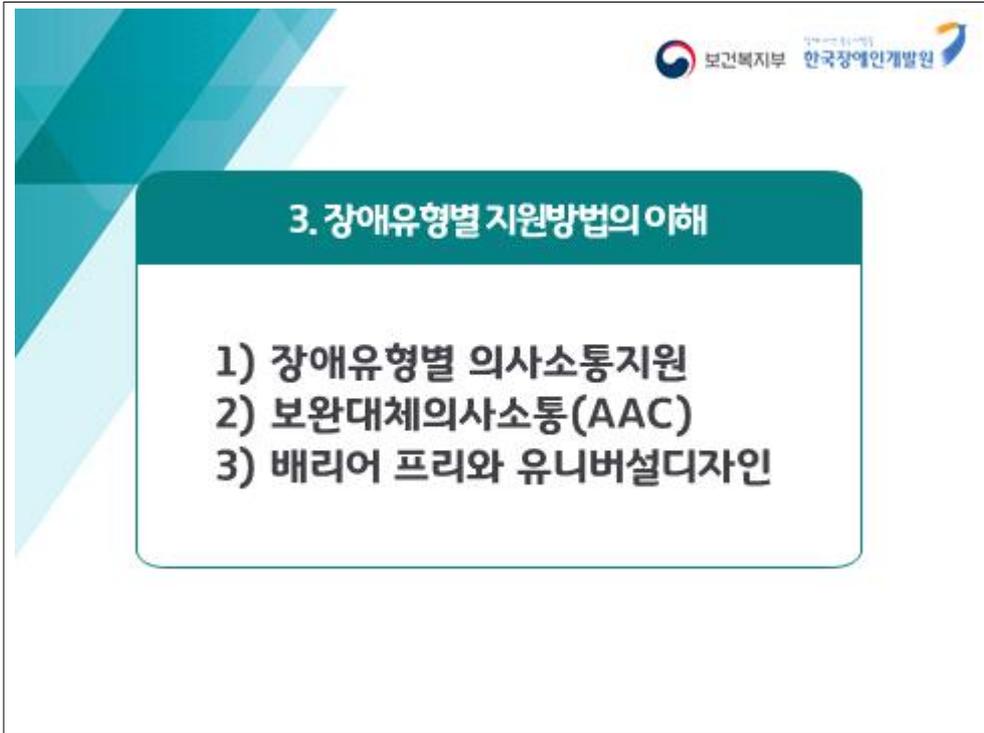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령 별표2(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칭: 교통약자법 •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과 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관련 지원법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정책은 사회통합 및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행정에서 행해지는 정책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TIP : 장애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시간은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이란 무엇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때에,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모티콘입니다. 왜 이모티콘을 사용할까요? 이모티콘이 문자언어 보다 감정을 더욱 더 잘 전달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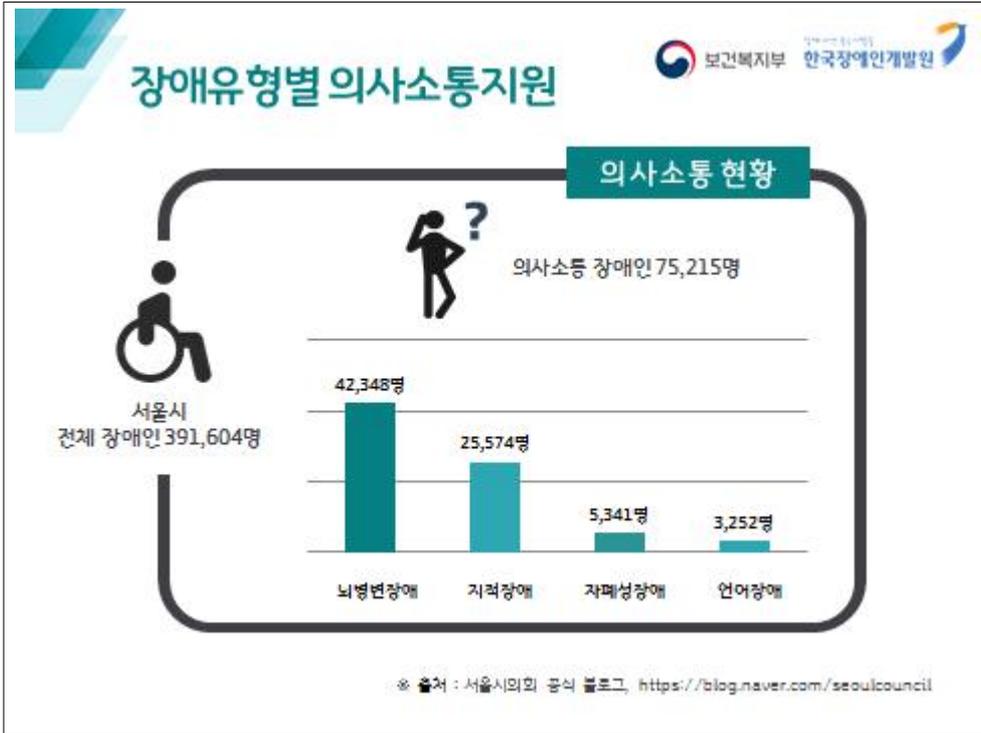
의사소통

-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고의 교환
- 자신의 메시지를 부호화하여 수신자에게 전달
- 수신자는 그 부호를 다시 풀어 자신의 것으로 이해
- 발신자와 수신자의 공유된 의미 필요
- 언어적 소통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까지 포함

의사소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까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며, 사람들 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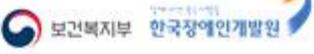
발신자가 생각해서 전달한 내용이 수신자에게 같은 의미로 전달되고, 결국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자료에 의하면,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는 인구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언어장애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 4가지 장애유형은 전체 장애유형의 약 19.5%를 차지하고,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78%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의사소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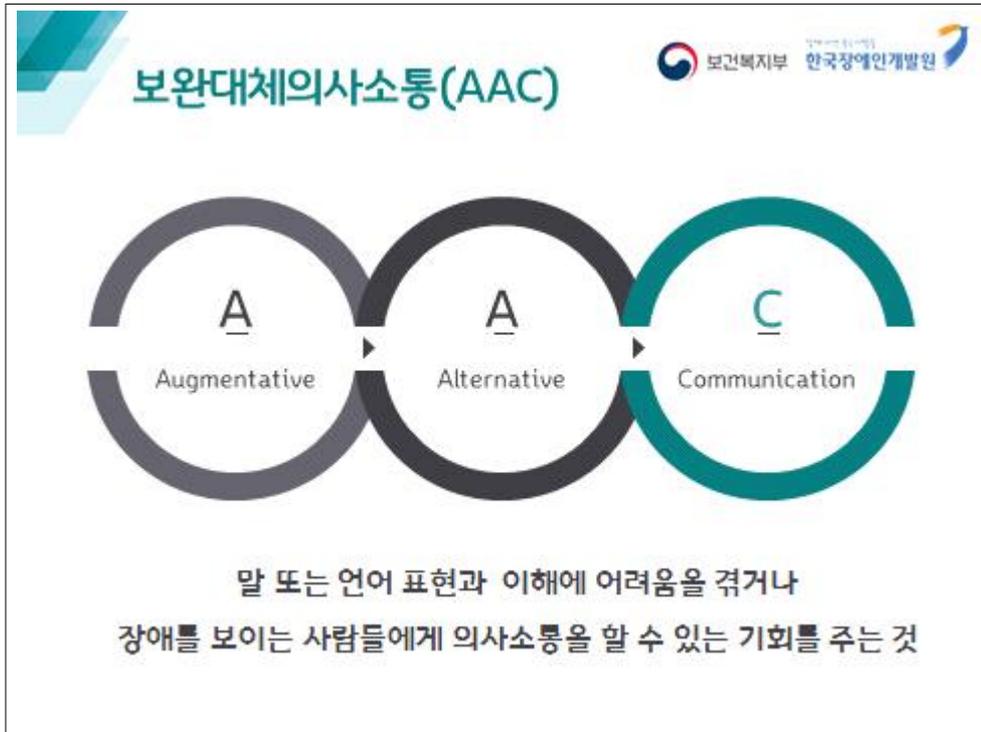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높이 맞추기 • 주위 깊게 들으려는 노력 •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보조기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사진 활용 • 쉬운 어휘 간단한 문장 사용 • 당사자에게 익숙한 단어 사용 • 상호작용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사소통방법 확인 (수어, 구화, 필담 등) • 얼굴 표정 몸짓 이용 • 서면자료 제공

그렇다면,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병변장애는 주위 깊게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거나 쉬운 어휘 또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수어, 구화, 필담 등 주요 의사소통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AAC’ 라고 불리는 이것은, 우리말로 풀어 ‘보완대체의사소통’ 이라고 합니다.

말 또는 언어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거나 크고 작은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말을 보완하거나(augment) 대체적인(alternative)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관련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IP :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youtube.com/watch?v=SowtDSX-Kfc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 AAC 영상 >
이화여자대학교, 2013년

* 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AAC 마이트키

(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의사 표현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들도 모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에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는 민원인이 방문한다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만든 ‘스마트 AAC’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림이나 문자로 입력하면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TIP : ‘스마트 AAC’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령 및 성별에 맞는 적합한 목소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he slide features a teal header with the text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and logos fo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Disabilities). A teal box contains the title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란?' (What is Barrier Free?). Below this, text explains that it means removing physical and systemic barriers for all people, including disabled, elderly, pregnant women, and temporary disabled. At the bottom, four icons represent a pregnant woman, a person in a wheelchair, a person with a cane, and a person using a walker.

다음은,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까요?

혹시 ‘배리어 프리’ 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리어 프리란 장애물을 뜻하는 배리어, 자유를 뜻하는 프리,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증 제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인증제도란?

- 건축물과 같은 개별 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한국토지주택공사(일반)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마다 BF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최근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배리어 프리 인증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즉,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배리어 프리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리어 프리 사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설치 사례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
- ▶ 장애인 화장실 경사 거울
- ▶ 경사로 & 핸드레일

출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배리어 프리 설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 장애인 화장실 경사 거울, 경사로, 핸드레일 등 다양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자동출입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차임벨, 휠체어용 책상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 하기 위해
처음부터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 하는 것을 의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건 영국의 건축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셸윈 골드스미스입니다. 이 개념이 널리 퍼진 건 중증장애를 가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로널드 메이드 교수가 알려면서부터입니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을 꿈꾸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배려’ 가 아니라 ‘이미 배려 받고 있는 사람과 아직 배려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배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쉽고, 편리하게’의 원칙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7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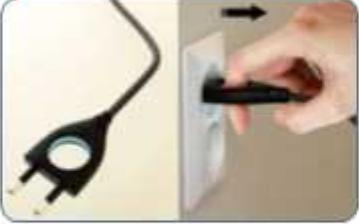
1. 누구든 불편함 없이 평등한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2. 다양한 환경적 제약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3.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간단한가?
4. 디자인이 전달하는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가?
5. 사용에 있어 위험과 실수에 대한 예방책이 있는가?
6. 사용이 편리한가?
7.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용 조건에서도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는가?

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례





- ▶ 제거가 쉬운 플러그
- ▶ 유니버설 디자인 손목시계
- ▶ 함께 설계된 경사로와 계단

※ 출처 : YANKO DESIGN, 브래클리어타임피스, 넥슨현조 공식 블로그

유니버설 디자인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례





- ▶ 기울어진 세면대(Tilting Sink)

※ 출처 : designboom magazine, 'tilting sink by gwenoël gasnier'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플러그**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손의 힘이 약한 사람도 다루기 쉽게 하였고, 두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손목시계**입니다. 일명 만지는 시계라고 불리는데 시침과 분침 대신 크기가 다른 구슬 두 개의 위치를 만져서 시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진처럼 **경사로와 계단이 함께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례도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디자이너가 개발한 **기울어진 세면대**는 키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레버식 손잡이, 저상버스, 캐리어, 전동칫솔** 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둘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배리어 프리는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그 외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 등이 추가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리어 프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장애인을 맨 나중에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보편적 관점에서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4.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 1) 장애유형별 에티켓
- 2) 장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
- 3) 복지행정 실천을 위한 역할

장애유형별 에티켓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보행용 도플 혹은 손목스틱 등杖자를 잡아 물거나 어색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 안내견을 쓰디듬거나 음식물을 주지 않아 주세요.
-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가끔씩 시선을 맞추고 대화해 주세요.
- 복장을 안내할 때는 시각장애인의 말을 집중 수 있게 반쪽 앞에서 말씀시를 살짝 내밀어 주세요.

함께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이동을 도울 땐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 입재이를 치거나 키지 작은 지체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 주세요.
- 도움을 주려는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꼭 물어봐 주세요.
- 보조기기는 항상 장애인 앞에 두세요.
-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



이제 **장애유형별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하면, ‘안내견’을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이 안내견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내견을 쓰다듬는 행동, 먹을 것을 주는 행위, 안내견을 부르는 행위는 안내견의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안내견을 대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지체장애인과 면접 또는 회의를 준비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안돼요”, “하지마세요” 보다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 주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청각언어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어떠한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할 때 얼굴이나 눈을 바라보도록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TIP :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스스로 장애인식 특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

- 주민등록등본 점자로 출력해주세요.
- 서식의 글자를 큰 글자로 바꿔주세요.
- 서명을 대신해주세요.
- 수화로 민원처리를 하고 싶어요.
- 대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이 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4년 10월에 발간된 책입니다.

공무원용으로 따로 제작이 될 만큼 현장에서 장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입니다. 점자 출력을 원하는 시각장애인 분이 있다면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 점자 프린터나 점자 라벨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인근 복지관 등 점자출력이 가능한 곳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장애인분들에 대한 민원 응대입니다. 이는 확대 복사, 확대 출력을 통해 응대할 수 있으며,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사문서, 의사소견서, 시험문제지 등 저시력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시각장애 또는 지체장애인분들에 대한 민원 응대입니다. 서명을 대신 해달라는 민원에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필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명만큼은 꼭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응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업무와 관련된 관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입니다. 간단한 업무 처리는 필담으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화 통역센터나 각 지역의 농아인협회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 밖에 모든 복지시책은 우선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 장애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을 설명하고, 피교육자 스스로 활동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결론에 도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집을 나와 학교까지 가는 이 길에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의 물리적인 제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장애물도 함께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방법을 스스로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돌아가셔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한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재생)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그동안 장애를 어떤 시선으로 느끼셨나요?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바뀌셨나요?

여러분은 그동안 장애인을 민원인으로만 만나보셨나요?
장애인을 꼭 민원인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동료
그리고 나와 가까운 이웃, 그리고 또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TIP : 마지막으로 소감나누기를 통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립재활원 www.nrc.go.kr
-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gnurim.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감사합니다